

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라면을 테마로 한 이색축제 개최로 지역대표 축제 육성
- 사업의 기획·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기술 활용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관광축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유치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구미라면축제 민간위탁

- 1) 사업위치 : 구미시 일원
- 2) 예산액 : 400백만원(시비)
- 3) 사업내용 : ‘라면’을 테마로 한 이색 시민참여형 축제 프로그램 운영
 - 세계라면 음식문화 체험 및 이색 레시피 라면 푸드코트 운영
 - 라면을 주제로 한 전시회(회화, 사진 등) 개최
 - 각종 부대행사 및 무대공연 프로그램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2) 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」 제5조(관광진흥사업 및 추진 지원)
- 3) 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」 제15조(업무의 위탁)
- 4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다. 위탁사무

- 1) 라면 축제 총괄 운영
- 2) 축제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출연진 섭외
- 3) 축제홍보 마케팅, 경연 프로그램 운영시 모집요강 제작, 작품 접수, 심사진행, 시상, 전시회 개최 등
- 4)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장 안전관리

라. 위탁기간 : 3년

마. 위탁조건

- 1)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, 책임성,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- 2) 최근 2년 이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관련분야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
가) 선정 심의위원회

- 구성 근거 :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
- 구성 인원 : 6명 이상 15명 이하 (위원장 1 포함)
- 위원 자격
 -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·국·소장
 -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 -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
 - 변호사·공인회계사·노무사·기술사·건축사·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

-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, 사회적
경제 전문가

-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
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2) 평가내용 : 사업계획, 사업수행능력, 전문성 종합 심사

가) 평가표(안)

평 가 항 목			배 점			비 고
			우수	보통	미흡	
사업 계획 (30)	총 실 성	사업취지의 이해도 및 운영의 투명성	10	7	3	
	실행가능성	효율적 예산편성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여부	10	7	3	
	홍보계획	홍보수단(채널)의 다양화	10	7	3	
사업 수행 능력 (40)	보유능력	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보유 정도	15	10	7	
	독 창 성	프로그램의 차별성, 창의성	15	10	7	
	안전관리 (방역)계획	행사장소 시설물 안전관리 및 방역계획 수립 여부	10	7	3	
전문성 (30)	유사과업 수행실적 (축제행사관련 3억원이상)	5회 이상	30	20	10	최근2년내 수행실적
		3회 이상				
		2회 이하				

3) 평가방법 :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아. 성과평가결과(재계약/재위탁일 경우 작성) : 정산 시 성과평가 실시

자.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3. 부서의견

- 매년 지속 개최 가능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에 대한 전문성 및
효율성(피드백)을 감안하여 민간위탁함이 타당함.

4. 참고사항

- 관련 법규
- 합 의
-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관광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
2.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, 제작, 배포 등에 관한 사업

3.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
4.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
5.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
6.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5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
2. 재정부담 능력, 책임능력 및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수행 실적
4. 사업 운영의 투명성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·노동조건
6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
7.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 시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,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,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수탁기관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·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미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·국·소장
2.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
3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노무사·기술사·건축사·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
4.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5.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, 사회적경제 전문가
6.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, 민간위탁 신청자 등에게 현장 확인 또는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
2. 수탁자 선정 시 적격자
3.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
4.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

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구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개정 2021.11.17>

⑦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해당 민간 위탁 사무의 담당 또는 부서장이 된다.

소 관 부 서		관광진흥과
입 안 자	과 장	강 정 숙
	담 당	신 미 정
	담 당 자	이 선 영 (480-2652)